

유천면 종합감사 결과 보고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5. 9. 8. ~ 9. 11.(4일간)
-  감사범위 : 2013. 10. 22 ~ 2015. 8. 31까지 업무전반
-  감 사 반 : 법무감사담당 외 5명
-  중점 감사내용
 -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여부
 - 정부지원사업 관련 관리실태
 - 각종 민원 및 업무처리 실태 적정여부 등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33건(주의 7, 시정 8, 현지시정 18)
 - 본 처분 15건(주의 7, 시정 8)
- 재정상 조치
 - 5건 5,904천원(회수 1건 2,800천원, 지급 1건 82천원,
부과 1건 992천원, 설계변경 2건 2,030천원)
- 신분상 조치
 - 5명(훈계 2명, 주의 3명)

지적사항

1. 지출 및 지급의 원칙 위반

- 예천군 재무회계규칙 제52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및 동 규칙 제67 (개산급의 정산)에 의거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 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하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지방하천(중평천) 하상정비(준설) 장비(굴삭기)임차 외 2건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지출.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2. 환경미화원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부적정

- 예천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31조에 의거 연차유급휴가 미 실시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4년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시 손○○ 및 양○○에 대하여 연가 일수 착오계상으로 82,300원 과소지급.
 - ▶ 과소 지급한 82,300원은 지급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3.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소홀

-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106조(출납의 정리구분)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제120조(세입세출일계표)군금고지출 대행점은 세입세출금의 출납이 발생할 때마다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에 의하여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금고 지출 대행점은 세입세출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세입세출일계표에

의한 현금출납부의 일일결산을 소홀히 하여 통장잔액과 현금출납부 불일치.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4. 정화조청소 이행·지도 여부 소홀

-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환경관리과-10706(2015.04.03.)호에 정화조 청소이행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연초 월별 청소 안내엽서 발송계획 수립 및 청소 도래일 1개월 전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안내엽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이때 발송하겠다는 내부결재 문서를 필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엽서를 발송 하는 등 정화조 청소 이행·지도를 한 근거가 없으며 관리에 소홀.

▶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미실시자에 대하여 안내엽서를 발송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5. 재활용품 수집 판매대금 납부 지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수납금 납입)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재활용품 수집 판매대금을 수납하면서 9건 1,735,900원을 지연 납부.

▶ 세외수입 수납금은 징수일 다음날까지 세입처리를 완료하도록 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6. 공사비 과다 계상

- 건설공사를 설계 시행함에 있어 건설표준품셈, 공사원가계산적용 기준,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고, 시공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을 정리하여 조치하여야 하나,

- 2015. 7. 9. ●●건설(주) 대표 정○○와 계약하여 시공중인 광전(너발)옹벽설치공사를 설계 및 계획함에 있어, 주요 사업공종인 포장 중단계획을 기준으로 L형옹벽 시공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여야 하나, 이와 반대로 계획하여 공사비를 과다 설계 계상하였음에도, 설계변경 등을 조치를 하지 않아 공사비 합계 1,910천원을 과다설계 계상.
 - ▶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설계변경을 통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고,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 2015. 6.22.●●건설(주) 대표 정○○와 계약하여 시공중인 송전천호안 응급복구공사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토공 및 블록쌓기 단가를 부적합하게 적용 및 작성하여 공사비를 과다 설계 계상하였음에도, 설계변경 등을 조치를 하지 않아 공사비 합계 120천원을 과다설계 계상.
 - ▶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설계변경을 통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고,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 2014.3.27.~2014. 4.30.까지 ■■건설(주) 대표 김○○와 계약하여 시공한 사곡리(머구재) 농로포장공사에 대해서 U형개거 시공시 버림콘크리트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고 시공 하였으며, 또한 본 사업에 설계된 구조물 일부(L형측구, 면벽)를 시공하지 않았으나, 준공처리 하기 전 현장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준공처리 하여 공사비 합계 2,800천원을 과다 지급.
 - ▶ 과다 지급된 공사비 2,800천원을 회수하고, 준공검사 시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7. 경로당(노인여가시설) 관리카드 관리 소홀

-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을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9762(2008.4.16.)호에 의거 경로당실 태조사 시행 후 2008.4.23일부터 변경된 서식의 경로당관리카드를 작성 사용하도록 하였음에도, 2008년 4월 23일부터 감사일 현재 까지 관내 31개소 경로당을 관리하면서 구 서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경로당 관리를 위하여 변경된 서식으로 관리하지 않는 등 경로당 점검(안전) 및 지도 관리에 소홀.
- ▶ 경로당관리카드를 변경된 서식으로 사용하고, 경로당 현황, 변동 사항, 경로당 점검(안전) 및 지도사항을 추진 기록 관리하도록 하여,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8.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 사후관리 누락

- 매년 읍면동 사회복지 업무안내에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는 종결 후, 6개월 단위로 1회씩 총 2번 실시하고, 서비스연계가구 1회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도 병행 실시하라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3회 통보된 10가구 중 2015년 9월 중 처리해야 될 8건, 전출 1건을 제외한 유천면 화지2길 한○○ 가구에 대하여 6개월 단위로 1회씩 총 2번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모니터 상담지를 작성하여,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나 2014년 6월 등록 후 2014년 12월 등록을 누락.
- ▶ 대상자에게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모니터 상담지를 작성하여 행복e음시스템에 등록하여 사후관리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9. 인감증명대리발급사실통보 소홀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인감증명대리발급 시 우편이나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천면 송전길 8-5윤○○외 11건에 대한 인감증명대리

발급 사실 미 통보.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10. 한우FTA 폐업지원제 사후관리 소홀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원예·축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 등의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고자 2013년 한우 폐업지원제 사업을 시행하여 2014년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5년간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토록 사업시행 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나, 한우폐업지원제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2014년 폐업지원 축산농가에 대하여 2015년도 폐업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업무에 소홀.
- ▶ 기재 누락된 폐업지원 관리카드를 보완 작성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11. 상토지원사업 공급협의회 개최에 따른 회의서류 미비

- 자연채취 상토 사용으로 인한 육묘 실패율을 줄이고 안정적인 벼농사 실현을 위해 품질이 보증된 우량상토를 지원하며 지원시에는 읍·면 상토공급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상토를 자율적으로 결정(공급업체, 상토품목 등)한 후 농가에 공급하도록 유도하고 개최결과 및 회의록 등을 작성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4년 2015년 상토지원사업 공급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개최 결과를 작성·비치하여야 할 회의록 및 의결서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음.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12. 영농안전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관리 소홀

- 병해충 방제, 제초작업 등 영농 작업 시 농약, 돌 등으로 인한 중독, 상해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장비공급으로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코자 영농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급대상자 선정 시 최근 3년간 지급된 사실이 없는 농가 우선 배정하며, 특정인에게 매년 연속하여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시행 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나, 영농 장비 지원 사업 업무를 추진하면서 2014년 지원된 농가 중 2015년에 70농가에 중복 지원하여 지원대상자 선정관리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13.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2013년~2014년까지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21명 992,4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음.

▶ 부과 누락된 과태료 대상자 2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